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정	1996. 7. 18.	조례 제1455호	일부개정	2012. 2. 29.	조례 제2383호
개정	1996. 9. 20.	조례 제1513호	일부개정	2012. 8. 7.	조례 제2408호
개정	1996. 11. 20.	조례 제1522호	일부개정	2012. 10. 12.	조례 제2421호
개정	1996. 12. 31.	조례 제1528호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1997. 8. 1.	조례 제1549호	일부개정	2013. 1. 8.	조례 제2438호
개정	1998. 9. 1.	조례 제1577호	일부개정	2013. 2. 19.	조례 제2449호
전면개정	1999. 1. 1.	조례 제1610호	일부개정	2013. 8. 6.	조례 제2480호
전면개정	1999. 6. 1.	조례 제1622호	일부개정	2013. 11. 7.	조례 제2503호
개정	1999. 9. 1.	조례 제1645호	일부개정	2014. 1. 2.	조례 제2509호
개정	1999. 11. 23.	조례 제1661호	일부개정	2014. 3. 20.	조례 제2528호
개정	2000. 4. 1.	조례 제1686호	일부개정	2014. 7. 29.	조례 제2549호
개정	2000. 9. 19.	조례 제1706호	전부개정	2014. 11. 14.	조례 제2574호
개정	2000. 12. 29.	조례 제1717호	일부개정	2015. 2. 27.	조례 제2605호
개정	2001. 12. 29.	조례 제1762호	일부개정	2015. 7. 30.	조례 제2652호
개정	2002. 4. 10.	조례 제1767호	일부개정	2016. 2. 18.	조례 제2713호
개정	2003. 7. 9.	조례 제1822호	일부개정	2016. 6. 17.	조례 제2740호
개정	2003. 10. 16.	조례 제1835호	일부개정	2016. 10. 20.	조례 제2756호
개정	2003. 12. 11.	조례 제1846호	일부개정	2017. 5. 18.	조례 제2819호
개정	2004. 7. 29.	조례 제1870호	일부개정	2017. 11. 16.	조례 제2884호
개정	2004. 11. 6.	조례 제1874호	일부개정	2018. 3. 29.	조례 제2935호
개정	2005. 3. 29.	조례 제1907호	일부개정	2018. 7. 31.	조례 제2970호
개정	2005. 11. 16.	조례 제1966호	일부개정	2018. 10. 5.	조례 제2977호
개정	2006. 2. 24.	조례 제1983호	일부개정	2019. 10. 28.	조례 제3126호
개정	2006. 12. 29.	조례 제2033호	일부개정	2020. 7. 10.	조례 제3212호
개정	2007. 9. 20.	조례 제2060호	일부개정	2021. 7. 9.	조례 제3323호
개정	2008. 3. 21.	조례 제2083호	일부개정	2021. 12. 30.	조례 제3382호
전부개정	2008. 7. 7.	조례 제2105호	일부개정	2022. 8. 12.	조례 제3428호
일부개정	2009. 6. 18.	조례 제2167호	일부개정	2022. 12. 30.	조례 제3469호
일부개정	2010. 2. 23.	조례 제2244호	일부개정	2023. 5. 22.	조례 제3501호
일부개정	2010. 10. 7.	조례 제2277호	일부개정	2023. 10. 10.	조례 제3562호
일부개정	2011. 2. 8.	조례 제2304호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1. 12. 29.	조례 제2368호	일부개정	2023. 12. 29.	조례 제359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부터 제134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와 제30조에 따라 안양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제2조(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의 소속 하에 두는 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 18., 2019. 10. 28., 2020.

7. 10., 2022. 12. 30., 2023. 10. 10.>

1. 직속기관: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2. 사업소: 평생학습원, 상하수도사업소, 하천녹지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3. 하부행정기관: 만안구, 동안구, 안양1동, 안양2동, 안양3동, 안양4동, 안양5동, 안양6동, 안양7동, 안양8동, 안양9동, 석수1동, 석수2동, 충훈동, 박달1동, 박달2동, 비산1동, 비산2동, 비산3동, 부흥동, 달안동, 관양동, 인덕원동, 부림동, 평촌동, 평안동, 귀인동, 호계1동, 호계2동, 호계3동, 범계동, 신촌동, 갈산동

제3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실·국장의 직급과,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5. 18.>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과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7. 5. 18.]

제4조(소재지) 시 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시 본청

제5조(실·국의 설치) ①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경제실, 안전행정국, 복지문화국, 도시주택국, 도로교통환경국을 둔다. <개정 2019. 10. 28., 2020. 7. 10.>

② 부시장 직속으로 홍보기획관, 감사관, 청년정책관을 둔다. <개정 2016. 2. 18., 2017. 5. 18., 2018. 3. 29., 2018. 10. 5.>

[제목개정 2017. 5. 18.]

제6조(기획경제실에 두는 과) ① 기획경제실에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고용노동과, 기업경제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를 둔다. <개정 2016. 6. 17., 2016. 10. 20., 2017. 5. 18., 2018. 3. 29., 2018. 10. 5., 2020. 7. 10., 2021. 12. 30.>

② 기획경제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2. 18., 2016. 6. 17., 2016. 10. 20., 2017. 5. 18., 2018. 10. 5., 2019. 10. 28., 2020. 7. 10., 2021. 12. 30., 2022. 12. 30.>

1. 시정의 종합기획·조정, 시책·인문지원, 평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2. 예산, 재정분석·경영투자, 법무, 의회에 관한 사항
3. 일자리정책, 일자리지원, 노동정책, 산업재해예방,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역경제 활성화·시장 지원, 중소기업 육성, 4차산업혁명, 지식산업·기업 유치, 기업 설립·지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리,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 차량지원에 관한 사항
6. 지방세정, 과표전산, 세입관리, 세무조사, 차량세무에 관한 사항
7. 징수행정, 체납세 징수,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7. 5. 18.]

제7조(안전행정국에 두는 과) ① 안전행정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정책과, 체육과,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를 둔다. <개정 2019. 10. 28., 2022. 12. 30.>

② 안전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6. 17., 2016. 10. 20., 2017. 5. 18., 2019. 10. 28., 2022. 12. 30., 2023. 12. 29.>

1. 복무관리·의전, 인사행정, 조직관리 및 공무원교육, 공무원복지,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선거, 소통협치, 국제교류, 민간협력·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 정책 총괄·조정, 안전점검, 인적·사회적재난 대응 총괄, 24시간 전담 상황반 운영, 재난예방, 방재·복구지원, 민방위에 관한 사항
4. 체육지원, 생활체육, 체육시설 건립·관리에 관한 사항
5. 민원행정, 여권발급, 차량등록, 차량검사, 차량관련 특별사법경찰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보기획, 행정정보, 정보보호, 공간정보, 통신운영, 콜센터에 관한 사항

제8조(복지문화국에 두는 과) ① 복지문화국에 복지정책과, 문화관광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교육청소년과, 위생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0. 7. 10., 2022. 12. 30.>

② 복지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6. 17., 2017. 5. 18., 2017. 11. 16., 2019. 10. 28., 2020. 7. 10., 2021. 7. 9., 2022. 12. 30.>

1. 복지정책 총괄기획, 생활보장, 안양형복지, 무한돌봄, 아동복지, 아동보호, 아동희망드림에 관한 사항
2. 문화정책, 문화관광, 문화유산,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3. 노인정책, 노인복지, 노인시설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정책, 장애인복지, 장애인시설에 관한 사항
5. 여성정책, 가족복지·다문화지원, 보육정책, 보육지원에 관한 사항
6. 학교교육 기획·지원, 창의교육, 청소년, 청소년안전에 관한 사항
7. 식품정책, 식품안전, 도시농업, 축산유통·방역,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제9조(도시주택국에 두는 과) ① 도시주택국에 도시계획과, 신성장전략과, 도시재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주택과, 시설공사과를 둔다. <개정 2016. 2. 18., 2018. 10. 5., 2021. 12. 30., 2022. 12. 30.>

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2. 18., 2016. 6. 17., 2016. 10. 20., 2018. 10. 5., 2019. 10. 28., 2020. 7. 10., 2021. 7. 9., 2021. 12. 30., 2022. 12. 30.>

1. 도시정책, 도시계획, 도시관리, 토지정보, 도로명주소 사업에 관한 사항
2. 신성장전략, 균형발전, 사업개발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 원도심정비,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4. 도시정비, 도시재개발, 재건축, 신도시정비에 관한 사항
5. 건축행정, 건축허가, 건축경관, 건축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 관리, 공동주택 감사, 공동주택 사업계획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7. 공용청사 및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제10조(도로교통환경국에 두는 과) ① 도로교통환경국에 도로과, 철도교통과, 스마트도시정보과, 대중교통과,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를 둔다. <개정 2020. 7. 10., 2021. 12. 30., 2022. 12. 30.>

② 도로교통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7. 10., 2021. 7. 9., 2021. 12. 30., 2022. 12. 30., 2023. 12. 29.>

1. 도로시설 관리의 종합기획·조정, 도로시설공사, 도로정비, 보행환경에 관

한 사항

2. 철도기획, 철도사업, 교통정책·교통개선 대책추진, 주차정책에 관한 사항
3. 통합센터운영, 스마트사업, 교통정보, 영상정보, ICT융합, 빅데이터에 관한 사항
4. 버스, 택시·화물자동차,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
5. 환경의 종합정책·조정·지도관리, 환경안전, 수질오염 총량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 정책, 미세먼지 대응, 대기환경,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
7.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본조신설 2019. 10. 28.]

[제목개정 2020. 7. 10.]

제3장 직속기관

제11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지역보건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개정 2018. 10. 5., 2021. 12. 30.>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의 명칭은 만안구보건소와 동안구보건소로 하고 그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 18.>

1. 만안구보건소: 안양동, 석수동, 박달동
2. 동안구보건소: 비산동, 관양동, 평촌동, 호계동

③ 만안구보건소에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를 두고, 동안구보건소에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를 둔다. <개정 2017. 5. 18., 2021. 12. 30.>

[중진 제10조에서 이동 2019. 10. 28.]

제12조(소장) ①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만안구보건소와 동안구보건소에 각각 소장을 둔다. <개정 2017. 5. 18., 2019. 10. 28.>

② 소장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중진 제11조에서 이동 2019. 10. 28.]

제13조(소관사무) 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 10. 5.>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9. 10. 28.]

제4장 사업소

제1절 평생학습원 <개정 2022. 12. 30.>

제14조(직무) 평생학습원은 노인과 시민의 능력개발 기회 확대, 시민의 교육·문화 증진 기여 및 청소년의 독서기풍 조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 12. 30.>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9. 10. 28.]

제15조(원장) ① 평생학습원에 원장을 둔다. <개정 2022. 12. 30.>

②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9. 10. 28.]

제16조(시설의 명칭과 위치) 평생학습원에서 관장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 12. 30.>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9. 10. 28.]

제17조(업무) ① 평생학습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 12. 30.>

1. 평생학습센터: 시민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시간제 보육사업, 작품발표 및 전시
2. 노인복지회관: 노인 정서함양과 여가활동 참여를 위한 교육 운영 및 편의 시설 제공
3. 시립도서관: 자료의 선정·구입 및 수집 정리, 자료의 보관·열람 및 대출, 시설의 유지 관리
4. 학습원 내 시설물, 동안청소년수련관, 보훈회관의 시설물 보수·정비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 외에 시민의 능력개발 및 평생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을 사용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19. 10. 28.]

제2절 상하수도사업소

제18조(직무) 상하수도사업소는 정수 생산, 수질시험 및 검사, 정수장·배수지·가압장의 시설 관리, 하수도 및 하수처리 시설의 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19. 10. 28.]

제19조(소장) ① 상하수도사업소에 소장을 둔다.

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19. 10. 28.]

제20조(시설의 명칭과 위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장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19. 10. 28.]

제21조(업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상수도행정의 종합기획·조정, 공과금 및 제수수료의 부과 징수, 계량기 관리에 관한 사항
2. 수돗물 공급관로의 개량 및 유지관리
3. 수돗물의 생산 및 안정적 공급, 정수장·배수지·가압장의 보호 유지관리
4. 하수도 및 하수처리 시설·관리의 종합기획 및 건설에 관한 사항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19. 10. 28.]

제3절 하천녹지사업소 <개정 2020. 7. 10.>

제22조(직무) 하천녹지사업소는 생태하천 관리, 녹지·산림,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6. 17., 2020. 7. 10.>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19. 10. 28.]

제23조(소장) ① 하천녹지사업소에 소장을 둔다. <개정 2020. 7. 10.>

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19. 10. 28.]

제24조(시설의 명칭과 위치) 하천녹지사업소에서 관장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

치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 7. 10.>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19. 10. 28.]

제25조(업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 6. 17., 2020. 7. 10.>

1. 하천시설 설치·관리, 안양천 생태보호에 관한 사항
2. 녹지·산림, 공원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19. 10. 28.]

제4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개정 2019. 10. 28.>

제26조(직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농수산물의 안정적 수급 등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19. 10. 28.]

제27조(소장) 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둔다.

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19. 10. 28.]

제28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수산물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2.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3.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유통종사자 지도·감독

[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19. 10. 28.]

제5장 하부행정기관

제1절 자치구가 아닌 구

제29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에 자치구가 아닌 구(이하 “구”라 한다)로 만안구, 동안구를 둔다. <개정 2021. 12. 30.>

② 제1항에 따른 구의 사무소 명칭과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만안구청: 안양동, 석수동, 박달동
2. 동안구청: 비산동, 관양동, 평촌동, 호계동

[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19. 10. 28.]

제30조(구청장) ①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만안구와 동안구에 각각 구청장을 둔다. <개정 2019. 10. 28.>

② 구청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과 동장을 지휘·감독한다.

[종전 제32조에서 이동 2019. 10. 28.]

제31조(구에 두는 하부조직)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복지과를 둔다. <개정 2016. 6. 17.>

[종전 제33조에서 이동 2019. 10. 28.]

제2절 동

제32조(설치)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개정 2021. 12. 30.>

[종전 제34조에서 이동 2019. 10. 28.]

제33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반 조직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생활지원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수행한다.

[종전 제35조에서 이동 2019. 10. 28.]

제34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시장과 구청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종전 제36조에서 이동 2019. 10. 28.]

제35조(관할구역)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그리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의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2. 30.>

[종전 제37조에서 이동 2019. 10. 28.]

제6장 지방공무원 정원

제36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040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 2. 27., 2015. 7. 30., 2016. 2. 18., 2016. 10. 20., 2017. 5. 18., 2017. 11. 16., 2018. 3. 29., 2018. 10. 5., 2019. 10. 28., 2020. 7. 10., 2021. 7. 9., 2021. 12. 30., 2022. 12. 30., 2023. 5. 22., 2023. 12. 29.>

1. 집행기관의 정원: 1,998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42명

[중진 제38조에서 이동 2019. 10. 28.]

제37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중진 제39조에서 이동 2019. 10. 28.]

제38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중진 제40조에서 이동 2019. 10. 28.]

제39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중진 제41조에서 이동 2019. 10. 28.]

부칙 <2014. 11. 14. 조례 제2574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② 안양시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③ 안양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도시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건설교통사업소장”을 “도로교통사업소장”으로 한다.

④ 안양시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도시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건설교통사업소장”을 “도로교통사업소장”으로 한다.

⑤ 안양시 노점상 전업자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건설교통사업소장”을 “도로교통사업소장”으로 한다.

⑥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평생학습원장”을 “평생교육원장”으로 “건설교통사업소장”을 “도로교통사업소장”으로 한다.

⑦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중 “평생학습원”을 “평생교육원”으로 하고, 제1조 중 “평생학습원”을 “평생교육원”으로 하고, 제3조 중 “학습원”을 “교육원”으로 하며, 제4조제1항 중 “학습원장”을 “교육원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제4호 중 “학습원”을 “교육원”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학습원”을 “교육원”으로 하며, 제19조제2항 중 “학습원장”을 “교육원장”으로 한다.

⑧ 안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3호 중 “평생학습원장”을 “평생교육원장”으로 한다.

⑨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평생학습원”을 “평생교육원”으로 한다.

⑩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정책추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가목 중 “평생학습원”을 “평생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가목 중 “도시국”을 “도시주택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가목 중 “녹지공원과”를 “녹지과”, “공원관리과”로, “건설교통사업소”를 “도로교통사업소”로 한다.

⑪ 안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를 “정책기획과”로 한다.

⑫ 안양시향토사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⑬ 안양시 민원읍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감사실”을 “자치행정과”로 한다.

⑭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참조]

⑮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 참조]

부칙 <2015. 2. 27. 조례 제2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7. 30. 조례 제2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 18. 조례 제27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가목 중 “도시재생정책관”을 삭제한다.

부칙 <2016. 6. 17. 조례 제2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참조]

②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나목 중 “녹색성장과”를 삭제한다.

③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 참조]

부칙 <2016. 10. 20. 조례 제2756호>

이 조례는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5. 18. 조례 제28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소장”을 “만안구보건소장”으로 한다.

② 「안양시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안양시보건소”를 “만안구보건소와 동안구보건소”로 한다.

제2조 중 “안양시보건소”를 “만안구보건소와 동안구보건소”로 한다.

③ 「안양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보건소장”을 “동안구보건소장”으로 한다.

④ 「안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안양시보건소”를 “만안구보건소”로 한다.

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경제국”을 “기획경제실”로 하고, “홍보실, 감사실”을 “홍보기획관, 감사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나목 중 “안양시보건소”를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로 한다.

⑥ 「안양시 노점상 전업자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경제실장”으로 한다.

⑦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경제실장”으로 한다.

⑧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참조]

⑨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경제실장”으로 한다.

⑩ 「안양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경제실장”으로 한다.

⑪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경제실장”으로 한다.

⑫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 참조]

⑬ 「안양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경제실장”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경제실장”으로 한다.

⑭ 「안양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홍보실장”을 “홍보기획관”으로 한다.

⑮ 「안양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홍보실에서”를 “홍보기획관이”로 하고, “홍보실”을 “홍보기획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홍보실”을 “홍보기획관”으로 한다.

⑯ 「안양시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사무기구를 감사실에”를 “사무기구를 감사관실에”로 하고, “감사실”을 “감사관”으로 한다.

⑰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감사실장”을 “감사관”으로 하고, “감사실”을 “감사관”으로 한다.

⑱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만안도서관”을 “만안도서관, 삼덕도서관”으로 하고, “평촌도서관”을 “평촌도서관, 관양도서관”으로 한다.

부칙 <2017. 11. 16. 조례 제28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업무담당국장”을 “업무담당 실·국장”로 한다.

제5조의5제2항 중 “업무담당국장”을 “업무담당 실·국장”로 한다.

②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장”을 각각 “실·국장”으로 한다.

③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담당국장”을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④ 「안양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업무담당국장”을 “업무담당 실·국장”로 한다.

⑤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업무담당국장”을 “업무담당 실·국장”로 한다.

⑥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당국장”을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⑦ 「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업무담당국장”을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⑧ 「안양시 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담당국장”을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⑨ 「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업무담당국장”을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⑩ 「안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업무담당국장”을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⑪ 「안양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담당국장”을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⑫ 「안양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업무담당국장”을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⑬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예산관련 업무담당국장”을 “예산관련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⑭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무담당국장”을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업무담당국장”을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⑮ 「안양시 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본청 국장”을 “본청 실·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8. 3. 29. 조례 제2935호>

이 조례는 2018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31. 조례 제29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5. 조례 제29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테크노밸리전략관”을 “청년정책관”으로 한다.

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나목 중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공원관리과), 도로교통사업소”를 “공원관리과”)로 한다.

가. 도시주택국, 도로교통국 사항

② 「안양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도로교통사업소장”을 “도로교통국장”으로 한다.

③ 「안양시 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도로교통사업소장”을 “도로교통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으로 한다.

④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중 “환경사업소장, 도로교통사업소장”을 “환경사업소장”으로 한다.

⑤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소관부서란 중 “체육생활과”를 “체육과”로 하고,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

⑥ 「안양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환경사업소장, 도로교통사업소장”을 “환경사업소장”으로 한다.

⑦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소관부서란 중 “체육생활과”를 “체육과”로 한다.

⑧ 「안양시 노점상 전업자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도로교통사업소장”을 “도로교통국장”으로 한다.

⑨ 「안양시 택시산업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도로교통사업소장”을 “도로교통국장”으로 한다.

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 <2020. 7. 10. 조례 제 3212호> 참조]

②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중 “환경사업소장”을 “하천녹지사업소장”으로 한다.

③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2020. 7. 10. 조례 제3212호> 참조]

④ 「안양시 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도로교통국장”을 “도로교통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호 “환경사업소장”을 “하천녹지사업소장”으로 한다.

⑤ 「안양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환경사업소장”을 “하천녹지사업소장”으로 한다.

⑥ 「안양시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환경사업소장”을 “도로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

⑦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도로교통국”을 “도로교통환경국(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시설공사과)”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 녹지과, 공원관리과)”를 “하천녹지사업소”로 한다.

나. 도로교통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에 관한 사항

⑧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도로교통국장”을 “도로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

⑨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도로교통국장”을 “도로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

⑩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로교통국장”을 “도로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

⑪ 「안양시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증 중 “하천관리과”를 “생태하천과”로 하고, “환경보전과”를 “환경정책과”로 한다.

부칙 <2021. 7. 9. 조례 제3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0. 조례 제33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생략] <제3382호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 참고>

②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가목 중 “시설공사과”를 삭제한다.

③ 「안양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교통정책과장”을 “철도교통과장”으로 한다.

부칙 <2022. 8. 12. 조례 제3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30. 조례 제34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나목 중 “평생교육원”을 “평생학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도로교통환경국(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를 “도로교통환경국(도로과, 철도교통과, 스마트도시정보과, 대중교통과)”로 한다.

②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관부서란 중 “안전총괄과”를 “안전정책과”로 하고, “식품안전과”를 “위생정책과”로 한다.

③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관부서란 중 “식품안전과”를 “위생정책과”로 한다.

④ 「안양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8항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정책과장”으로 하고, 제14호제2항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

⑤ 「안양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식품안전과장”을 “위생정책과장”으로 한다.

⑥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중 “평생교육원장”을 “평생학습원장”으로 한다.

⑦ 「안양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평생교육원장”을 “평생학습원장”으로 한다.

⑧ 「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평생교육원”을 “평생학습원”으로 한다.

⑨ 「안양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평생교육원장”을 “평생학습원장”으로 한다.

⑩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평생교육원”을 “평생학습원”으로 한다.

⑪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중 “평생교육원”을 “평생학습원”으로 하고, 제1조 중 “평생교육원”을 “평생학습원”으로 하며, “안양시평생교육원”을 “안양시평생학습원”으로 한다.

제3조 중 “평생교육원”을 “평생학습원”으로 하고, “교육원”을 “학습원”으로 하며, “만안평생교육센터, 동안평생교육센터”를 “만안평생학습센터, 동안평생학습센터”로 한다.

제4조제1항의 “안양시평생교육원장”을 “안양시평생학습원장”으로 하고, “교육원장”을 “학습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평생교육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 “교육원”을 “학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원”을 “학습원”으로 한다.

제2장 제목 “평생교육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하고, 제8조제1호 중 “평생교육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하며, 제10조제1항 중 “평생교육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교육원장”을 “학습원장”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석수도서관장, 평촌도서관장”을 “만안구도서관장, 동안구도서관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평생교육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한다.

⑫ 「안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3호 중 “평생교육원장”을 “평생학습원장”으로 한다.

부칙 <2023. 5. 22. 조례 제3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0. 10. 조례 제3562호,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석수3동”을 “충훈동”으로, “관양1동, 관양2동”을 “관양동, 인덕원동”으로 한다.

별표 1의 시 분청 및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소재지 표 중 기관명란의 “석수3동”을 “충훈동”으로, “관양1동”을 “관양동”으로, “관양2동”을 “인덕원동”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23. 12. 29. 조례 제3597호>

이 조례는 202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3. 12. 29.>

시 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소재지(제4조 관련)

기관명	소재지
안양시청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만안구보건소	안양시 만안구 문예로 48
동안구보건소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53번길 41
평생학습원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3
상하수도사업소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하천녹지사업소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313
만안구청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28
안양1동 행정복지센터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70
안양2동 행정복지센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384번길 50
안양3동 행정복지센터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28
안양4동 행정복지센터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193번길 34
안양5동 행정복지센터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157번길 18
안양6동 행정복지센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70번길 23
안양7동 행정복지센터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115
안양8동 행정복지센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11번길 17
안양9동 행정복지센터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142번길 12-9
석수1동 행정복지센터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52
석수2동 행정복지센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496
충훈동 행정복지센터	안양시 만안구 충훈로90번길 36
박달1동 행정복지센터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127번길 9
박달2동 행정복지센터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470
동안구청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8
비산1동 행정복지센터	안양시 동안구 비산로 12
비산2동 행정복지센터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106번길 70
비산3동 행정복지센터	안양시 동안구 운곡로 34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813
달안동 행정복지센터	안양시 동안구 달안로 65
관양동 행정복지센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358번길 46
인덕원동 행정복지센터	안양시 동안구 관양로 215
부림동 행정복지센터	안양시 동안구 달안로 154
평촌동 행정복지센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456번길 21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38번길 39
귀인동 행정복지센터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38
호계2동 행정복지센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57
호계3동 행정복지센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4
법계동 행정복지센터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7번길 63
신촌동 행정복지센터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28
갈산동 행정복지센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223번길 30

[별표 2] <개정 2022. 12. 30.>

평생학습원에서 관장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제16조 관련)

명 칭	위 치
만안노인복지회관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153번길 15
동안노인복지회관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1
만안평생학습센터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39
동안평생학습센터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3
안양시립석수도서관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217번길 34
안양시립만안도서관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51
안양시립삼덕도서관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58
안양시립박달도서관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459
안양시립평촌도서관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3
안양시립관양도서관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124
안양시립비산도서관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23
안양시립호계도서관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685번길 26
안양어린이도서관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66
안양시립벌말도서관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434번길 19-27

[별표 3] <개정 2019. 10. 28.>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장하는 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20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산정수장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121번길 80
포일정수장	의왕시 복지로 28
청계통합정수장	의왕시 덕장로 69
청계가압장	의왕시 별모루앞길 21
관양가압장	안양시 동안구 삼현길 34
명학배수지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51번길 38
석수배수지	안양시 만안구 화창로 82
안양3동배수지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498번길 55
호암배수지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352
비산배수지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121번길 79
평촌배수지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70
관양배수지	안양시 동안구 일동로 65
창박골배수지	안양시 만안구 창박로41번길 19
안양공공하수처리시설	안양시 만안구 석천로 1
석수공공하수처리시설	안양시 만안구 화창로 19

[별표 4] <개정 2020. 7. 10.>

하천녹지사업소에서 관장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제24조 관련)

명 칭	위 치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 320

[별표 5] <개정 2019. 10. 28.>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37조제1항 관련)

구 분	일 반 직	별정직 · 정무직
비 율	99%이상	1%이내

-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 지도직,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6] <개정 2023. 12. 29.>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7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율	1% 이내	6% 이내	24% 이내	34% 이내	28% 이내	6.5% 이상	0.5%이내

(비고)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 · 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 이내	97% 이상	6% 이내	94% 이상

3.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30%이내	55%이내	15% 이상	-	-

[별표 7] <개정 2023. 12. 29.>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38조 관련)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2,040	2,040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2,034	2,034					
2급	1	1					
3·4급	1	1					
4급	12	4	1	2	3	2	
5급	103	37	2	6	11	16	31
6급이하 소계	1,917	1,917					
전문경력관소계	1	1					
별정직 계	4	4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3	3					